학생종합서비스센터운영규정

제 정 2000. 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종합서비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조직) ①센터에는 센터장과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

②센터장은 취업지원팀장으로 하며,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겸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3조 (운영위원회) ①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종합서비스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위원은 학생지도위원이 겸임하며, 학생복지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 운영계획
2. 센터의 운영규정 개정
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
4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제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 취업지원팀에서 관장한다.

제4조 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담당한다.

1. 제증명 발급
2. 휴학원 및 복학원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
3. 각종 학사정보제공 및 학생생활에 관한 제반사항 안내
4. 각종 상담안내

1)학생상담실: 기초상담, 전문상담, 법률상담, 건강의료상담, 진로학업상담, 심리신상상담 2)종합민원실: 학사상담지원

.학생지원팀: 장학 및 써클, 체육, 예민관련

.취업복지팀: 취업 및 진로

.교 무 처: 학사 및 학적지원

.행정지원처: 등록업무 지원

5. 기타 학생서비스 업무

제5조 (센터이용) ①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.

②센터의 이용시간은 본 대학의 정상근무 시간과 같다. 다만,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센터장은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 (기타)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령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